

제안요청서 (세부사업명)	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(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)	공모 유형	자유공모형	기술료 납부대상	x
사업유형 해당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, <input type="checkbox"/> 경쟁형 R&D,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대상				
기획시 참조사항	○ 박사학위 취득 후 의료기관 또는 대학 등 기관에서 의사과학자의 안정적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연구 단절을 최소화 하고, 융합연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				

▶ 지원목적

- 임상적 지식을 바탕으로 미충족 의료수요 및 난치성 질환 등 극복을 위한 기초·융합연구를 수행하는 젊은 의사과학자의 안정적인 연구기반 마련 및 육성 지원

▶ 지원대상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·학·연·병 모두 가능
- 국내 기업(기업부설연구소 보유), 대학,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,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

지원분야	지원대상 요건
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(신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의사면허와 박사학위(M.D.-Ph.D.)를 모두 소지한 의과학 융합연구자 ※ 박사학위 취득 이후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연구자
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(심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의사면허와 박사학위(M.D.-Ph.D.)를 모두 소지한 의과학 융합연구자 ※ 박사학위 취득 이후 10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연구자
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(리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의사면허와 박사학위(M.D.-Ph.D.)를 모두 소지한 의과학 융합연구자 ※ 박사학위 취득 이후 1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연구자

-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박사학위의 세부전공이 전공의 수련과목에 해당하는 임상과목이 아닌 기초의학, 공학, 이학임을 증빙하여야 함(세부전공 표기된 학위증명서, 최종학위 논문 초록 제출)
(임상 전공과목 예시 : 가정의학, 방사선종양학, 비뇨의학, 산부인과학, 소아청소년과학, 외과학, 응급의학, 진단검사의학, 핵의학, 흉부외과학, 내과학, 마취통증의학, 신경과학, 신경외과학, 이비인후과학, 정신건강의학, 직업환경의학, 성형외과학, 안과학, 영상의학, 재활의학, 정형외과학, 피부과학)

- 과제신청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

- 연구기간과 군전문연구요원(병역특례자)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
- ‘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지원(전공의, 전일제 등)’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

※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(3책 5공)에 해당함
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‘신청요건’ 부분 참고

▶ 지원규모

지원분야	지원기간 (1차년도)	연간 연구개발비 (1차년도)	선정 예정 과제수
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(신진)	2년 9개월 이내 (9개월 이내)	200백만원 이내 (150백만원)	40개
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(심화)	2년 6개월 이내 (6개월 이내)	300백만원 이내 (150백만원)	30개
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(리더)	4년 6개월 이내 (6개월 이내) * 단계형 3+2년	500백만원 이내 (250백만원)	22개

※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

▶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(예시)

지원분야	성과목표																		
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(신진)	▪ 분야별 IF 상위 10% 이내 SCIE 논문 1편 이상																		
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(심화)	▪ 분야별 IF 상위 10% 이내 SCIE 논문 2편 이상																		
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(리더)	▪ (1단계) 성과실적 2점 이상																		
	▪ (2단계) 성과실적 누적 5점 이상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성과</th> <th>점수</th> <th>구분</th> <th>성과</th> <th>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논문</td> <td>상위 1% 이내</td> <td>3점</td> <td rowspan="3">특허</td> <td>국내 등록</td> <td>1점</td> </tr> <tr> <td>상위 5% 이내</td> <td>2점</td> <td rowspan="2">국외 등록</td> <td rowspan="2">2점</td> </tr> <tr> <td>상위 10% 이내</td> <td>1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성과	점수	구분	성과	점수	논문	상위 1% 이내	3점	특허	국내 등록	1점	상위 5% 이내	2점	국외 등록	2점	상위 10% 이내	1점
	구분	성과	점수	구분	성과	점수													
	논문	상위 1% 이내	3점	특허	국내 등록	1점													
상위 5% 이내		2점	국외 등록		2점														
상위 10% 이내		1점																	
※ 논문은 분야별 IF 상위 비율에 따라 점수 차등																			
※ 특허 등록 시 PCT 성과는 인정하지 않음																			

- ※ (공통) 논문 및 특허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에 근거하여 연구개시 6개월 이후 게재 신청 또는 출원된 실적만 인정, Review 논문은 성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만 인정
- ※ (공통) 연구내용과 관련 없는 성과(논문, 특허 등)를 제출할 경우 최종평가 시 성과로 불인정하고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
- ※ (공통) 총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마일스톤을 제시
 - 연구자 성과지표 달성 마일스톤은 각 연구개발 단계별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

▶ 특기사항

- (중복신청 제한) 주관연구책임자는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세부분야(신진, 심화, 리더) 중 1개 분야에만 신청가능하며, 중복신청 시 사전탈락 대상으로 간주함
- 1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하여야 함(공동/위탁 연구개발기관 구성 불가)
- 과제 수행기간 동안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지원의지(기관 확약서 등) 필수 제출
 - (공통) 연구시간 확보를 위하여 최소 주중 8시간 이상 연구시간 확보 필요
-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 이후 해외연수, 출장,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구 공백 발생 시 특별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

▶ 선정평가 기준

적용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신진) 연구책임자가 '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지원사업(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지원)' 수행 경험자인 경우 가점(0.5점),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인 경우 가점(1점) 적용 ○ (심화) 연구책임자가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신진분야(K-Medi 디딤돌 분야 포함) 수행 경험자인 경우 가점(0.5점),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경우 가점(1점) 적용
------	--
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항목	소항목
서면·구두 평가 (신진)	1. 연구개발 계획 (5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(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안요청서(RFP)의 목표와 지원내용에 부합함 -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○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시한 연구목표가 구체적이며 타당함 - 연구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 ○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음 ○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 수행 계획이 구체적이며 충실함 - 연구 추진전략, 절차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함 ○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이 적절하고 효율적임
	2. 연구개발 역량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의 우수성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음 ○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우수성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
	3. 연구개발 성과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의 성공가능성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·경제·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음 -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 및 확산 계획이 충분히 고려됨 ○ 연구결과의 파급효과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결과가 미충족 의료수요(unmet needs) 해소에 기여함
서면·구두 평가 (심화)	1. 연구개발 계획 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(10) ○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(10) ○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(10) ○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(10)
	2. 연구개발 역량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의 우수성(20) ○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우수성(10)
	3. 연구개발 성과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의 성공가능성(15) ○ 연구결과의 파급효과(15)
서면·구두 평가 (리더)	1. 연구개발 계획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(5) ○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(5) ○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(10) ○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(10)
	2. 연구개발 역량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의 우수성(20) ○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우수성(10)
	3. 연구개발 성과 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의 성공가능성(20) ○ 연구결과의 파급효과(20)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
제안요청서 (세부사업명)	의과학자 글로벌 연수 지원 (글로벌 의과학자 양성)	공모 유형	자유공모형	기술료 납부대상	x
사업유형 해당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, <input type="checkbox"/> 경쟁형 R&D,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대상				
기획 시 참조사항	○ 국내 의과학자가 세계 우수 연구기관에서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연수 기회 지원				

▶ 지원목적

- 국내 의과학자를 포함한 의과학자의 첨단 바이오메디컬 분야 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선도기술 보유·연구 중인 해외 의과대학·연구기관 등 기관 방문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최신 연구기법 습득 및 글로벌 연구경험 축적을 지원하고, 궁극적으로 국내 의과학자의 연구수준 향상 추구

▶ 지원대상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·학·연·병 모두 가능
 - ※ (단독과제)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복수 구성 및 공동·위탁 연구개발기관 구성 불가
-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**아래 ①, ② 요건 중 하나에**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
 - ① 의약학 계열 면허(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약사) 취득한 연구자(석사이상)
 - ※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**과제공고일 기준 만 43세 이하 연구자에 한함**
 - ② 기초의학, 공학, 이학 분야 석사 이상인 자 중 바이오메디컬 분야 논문 1편(주저자) 이상인 연구자
 - ※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**과제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하 연구자에 한함**
- 과제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**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**
 - 이중국적자, 외국인 또는 외국 영주권자인 경우
 - 보건복지부 또는 타부처 지원 해외연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
 - ※ 단, 과거 유사 연수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연구자 중 최근 2년(2022.1월 이후부터 과제 신청시까지) 내에는 연수를 수행한 실적이 없는 경우 과제 신청 가능
 - 연구기관과 군전문연구요원(병역특례자)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
 -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과학자 양성 사업/글로벌 공동연구 사업 또는 유사 연수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
 - ※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(3책 5공)에 해당함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▶ 지원규모

지원분야	지원기간	지원 연구개발비	선정 예정 과제수
의과학자 글로벌 연수	2년 6개월 이내	2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100백만원)	21개 내외 선정

- ※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및 기간 변동 가능
- ※ 해외 연수 소요기간(최소 2년 이상, 1회 분할 시행 가능)을 준수하여야 함
- ※ 예산범위, 경쟁률,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 예정 과제수는 변경될 수 있음
- ※ 미국국립보건원(NIH)의 K-VSTA 2nd 지원사업으로 연수를 희망하는 경우 하기 특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▶ **성과목표 및 연구내용(예시)**

지원분야	성과목표	지원내용(예시)
의과학자 글로벌 연수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분야별 IF 상위 20% 이내 SCIE 논문 1편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약 개시 1년 경과 후 게재 논문에 한함 - 연수 활동 중 수행 연구와 관련된 주제의 논문 이어야 하며,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실적만 인정함 - 공동저자에는 국내멘토, 해외멘토 중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○○○을 위해 ○○○ 기술을 보유·연구하고 있는 ○○○국의 ○○○ 기관 연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수 목적, 연수 후 기대성과, 연수 기관에서의 연수자 역할 및 연구 분야 등 구체적인 연수 활동 계획 제시 - 연수 과정 중 습득 연구기법 및 수행 연구 ○○○에 대해 ○○○저널 게재를 목표로 연구 연수를 수행하고자 함 등의 성과목표 달성 계획 제시

※ 제시된 성과목표는 반드시 포함하고 이외 추가성과를 연구자가 제안 가능

※ 성과목표 외 분기별 연수활동 보고서, 해외 멘토의 연수활동 평가 보고서(연차보고서), 국내 멘토의 연수 전/후 연구활동 평가 보고서(최종보고서) 제출 필수

▶ **특기사항**

1. 해외 연수 시행 및 기간

- (해외연수기간) 최소 2년 이상 연수 시행(1회에 한하여 분할 연수 가능)
- 협약 개시일 이후 출국, 협약 종료일 전 귀국을 원칙으로 함(협약 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출국할 것을 권장함)
- 해외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귀국의무 필수(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필수, 미준수 시 연구개발비 전액 환수)
- 연수 종료 후 5년간 연구활동, 진로 등 상태 매년 제출하여야 함(협약 종료 시 별도 안내)
- 연수기간 중 연간(12개월 기준) 15일을 초과하는 체류일에 대해서는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해야 함
- K-VSTA 지원사업과 별개로 NIH 연수 지원 가능(NIH 개별 연수자는 특기사항 2번 해당없음)

2. 연수자 중 미국국립보건원(NIH)의 K-VSTA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 준수하여 신청

-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, 협약개시일('24.07.01.)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박사후 과정(Post-doc) 연구자
 - ※ NIH Intramural Visiting Fellow Program(VFP)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 - ※ 학사, 석사, 박사 학위 모두를 국외 대학에서 취득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※ 최근 2년(2022.1월 이후부터 과제 신청시까지) 내에는 연수를 수행한 실적이 없더라도 박사후 국내 연수사업 기 수혜자는 신청 불가
- (연구분야) 암, 뇌신경계 질환, 심혈관계 질환, 대사 질환, 알레르기, 만성호흡기계 질환, 여성과 질환, 정밀 의료 등 NIH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 수행
-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인 美 NIH의 K-VSTA 2nd 지원사업 공고 내용 확인 요망
- 신청자는 연수를 원하는 美 NIH 기관의 멘토 추천서를 연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(별첨 NIH 멘토 추천서 양식 준용)
- 수혜기간 중 전업(full-time) 연구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, 타 취업 활동은 금지함
- NIH 연수 기간 중 인건비는 월 5백만원 정액 지원함(단, 주관기관 규정상 해당금액 초과 지급이 명시된 경우는 예외 인정 가능)

3. 연구계획서 작성 및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

- 연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
 - 글로벌 연수를 위한 희망 세부 연구분야 및 연수대상 국가/교류협력 기업 또는 기관을 반드시 명시
 -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수대상 기관에 각 1명씩 멘토* 지정
 - * 멘토는 연수자 및 연수비 전반에 대한 관리·운영 및 과제수행 관련 멘토링이 가능한 자로 지정
- ※ 과제 신청 시 해외 연수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정기관 정보로 기재하고, 협약 전까지 연수기관 및 멘토에 대해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함(미제출 시 협약 불가)

○ 연구개발비 산정기준

- 인건비, 연구활동비 등을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에 따라 자율편성 후 집행
- 단, 동 과제는 연구책임자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에 한해 편성할 수 있고, 참여인력 인건비는 집행 불가
- 인건비 단가 상한선은 공고시점의 기준 단가로 과제종료 시까지 유지(24년 기준단가 적용)

[연수 관련 연구비 편성]

직접비			간접비
연수자 준비금	체재비*	그 외 연구비	
실비(왕복항공료, 이주관련 경비, 의료보험료, 비자발급 수수료 등)	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름 (일비, 식비, 숙박비 등)	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자율 편성	직접비의 5% 이내

- 연수자 준비금 및 체재비는 연구활동비에 계상
- 체재비의 경우 소속기관의 해외 장기체재 시의 집행 기준을 적용(해외 출장 여비 단가 기준 적용 불가)하며, 소속기관 집행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*에 따라 집행
 - * [별표4] 국외 여비 지급표,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감액(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해 정액의 30%감액) 적용
- 과제기간 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없음
- 해외 연수기간 동안 동 과제의 인건비 계상율은 100%로 하여야하며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130%로 계상하여야 함
-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

4. 기타 주의사항

- 과제 수행 중 협약변경(연구목표, 계획, 기간 등의 변경)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
-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추가 연구성과 발생 및 활용 현황 분석 등을 위해 연구성과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함
- 연구기간 내 주관연구책임자의 신분이 변경된 경우 전문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연구의 지속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
- 해외 연수기관 정보 제공 및 과제 선정 후 해외연수활동 지원은 '혁신인재 육성 지원센터(한국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협회)'를 통해 관리·운영됨으로 주관연구책임자의 협조 필수
 - 혁신인재 육성 지원센터(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) : ejs@kamc.kr (글로벌기획협력팀, 02-6952-9684)

▶ 선정평가 기준

적용가점	해당사항 없음	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항목	소항목
구두발표 평가	1. 연수 계획(50)	○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(10) ○ 연수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(10) ○ 연수 중 수행 과제의 창의성(5) ○ 연수 수행 계획의 충실성(15) ○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(10)
	2. 연수 역량(30)	○ 연수자의 전문성 및 발전가능성(10) ○ 국외 협력 기관의 우수성·전문성(10) ○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원의지(10)
	3. 연수 성과(20)	○ 연수 및 협력 연구의 기대효과(10) ○ 성과 관리 및 활용 방안(10)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
제안요청서 (세부사업명)	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(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)	공모 유형	자유공모형	기술료 납부대상	x
사업유형 해당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, <input type="checkbox"/> 경쟁형 R&D,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대상				
기획시 참조사항	○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한 의사과학자(MD-PhD)의 국제적 연구 역량 함양, MD와 기초과학 Ph.D 간 공동연구를 리드하며 중개연구 역량 향상				

▶ 지원목적

- 국내외 의사과학자 중심의 다학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질병 기전 규명, 치료제(치료 기술) 개발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지원을 통해 향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사과학자 배출 및 국가 경쟁력 제고

▶ 지원대상

- 주관연구개발기관*은 국내 연구개발기관(산·학·연·병 모두 가능)
 - * 복수 구성 불가
- (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)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의사과학자*
 - * 국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득자 중 기초의학·공학·이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
 - ※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박사학위의 세부전공이 전공의 수련과목에 해당하는 임상과목이 아닌 기초의학, 공학, 이학임을 증빙하여야 함(세부전공 표기된 학위증명서, 최종학위 논문 초록 제출)
(임상 전공과목 예시 : 가정의학, 방사선종양학, 비뇨의학, 산부인과학, 소아청소년과학, 외과학, 응급의학, 진단검사의학, 핵의학, 흉부외과학, 내과학, 마취통증의학, 신경과학, 신경외과학, 이비인후과학, 정신건강의학, 직업환경의학, 성형외과학, 안과학, 영상의학, 재활의학, 정형외과학, 피부과학)
- (컨소시엄 구성)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*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구성
 - * 주관연구개발기관에는 연구책임자 외 1인 이상의 의사과학자(MD-PhD) 필수 구성(국내 신진 의사과학자(MD-PhD)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내 연구자 참여 권장)
 - * 2단계 진입 전까지 국외연구개발기관과 연구협력 양해각서(계약서)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

분류	연구개발기관	연구개발책임자	비고
주관 연구개발기관	국내 연구개발기관 (산·학·연·병)	의사과학자	과제 총괄
공동 연구개발기관	국내외 연구개발기관	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	국외 연구기관 참여 필수

※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과제공고일 기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에 부합하여야 함

※ 동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(3책 5공)에 해당하며, 유사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중복수행 불가함

▶ 지원규모

지원분야	지원기간	연간 연구개발비 (1차년도)	선정 예정 과제수
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	5년 이내 (2+3년 이내)	1,500백만원 이내 (1,125백만원 이내)	10개

※ 1차년도 연구기간은 9개월 이내이며,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연구개발비 변동 가능

※ 한-미 등 국가 연구자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되, 한국 측만 연구개발비 지원

※ 간접비는 직접비의 5% 이내 계상

▶ **중점 연구 분야**

- 의사와과학자를 중심으로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우수한 연구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등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구 분야
- 중점 연구 대상 질환에 대해 중점 활용 연구기술을 접목하여 공동연구 수행

중점 연구 대상 질환	중점 활용 연구기술
유전 및 난치질환, 암/신생물 질환, 감염/면역 질환, 신경계 질환, 대사/순환계 질환, 기타 미해결 질환	분자세포생물학, 면역학및생리학, 유전학및유전공학, 발생학및신경생물학, 치료/진단기기개발, 신약/의약품개발, 기타(재생의학 등)

※ 상기 내용은 과제에서 요구하는 중점 연구 방향으로 참고하여 연구 계획 수립(기타 분야 신청 가능)

▶ **성과목표 및 연구내용(예시)**

지원분야	성과목표
글로벌 의과과학자 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1단계) 실적 점수 3점 이상 ▪ (2단계) 실적 점수 8점 이상

- 실적 인정 기준
 - (논문) 분야별 IF 상위 10% 이내 1점, 상위 5% 이내 2점, 상위 1% 이내 3점
 - (특허) 국내 특허 등록 1점, 해외 특허 등록 2점, 삼국(미국, 일본, EU) 특허 등록 3점
 - * 국내 특허는 SMART AA 등급, K-PEG A1 등급 이상 인정하며, 특허 중 PCT 성과는 인정하지 않음
- ※ (공통) 논문 및 특허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에 근거하여 연구개시 6개월 이후 게재 신청 또는 출원된 실적만 인정, Review 논문은 성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만 인정

▶ **특기사항**

-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(3책5공)에 해당하며, 대상국가의 협력연구자(기관)는 공동연구개발기관 형태가 아닌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'연구개발기관 외 기관'으로 명시하여 참여하여야 함
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중으로, 개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 - 해외 연구책임자는 해당 국가의 인가를 받은 산학연병 소속 연구자여야 하며, 국내 소재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
- 연구계획서에 목표로 하는 개발 대상인 치료제 또는 치료기술에 대한 프로파일(TPP)*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마일스톤(정량지표)**을 제시하여야 함
 - * 1단계 연구계획서 작성 시 동일 기술 기반의 복수 제품에 대한 프로파일을 예시 형태로 제시 가능하며, 2단계 연구계획서 작성 시 단일 프로파일 제시
 - ** 마일스톤은 각 연구개발 단계별(TRL)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
- 주관연구개발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시 협업 예정인 해외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서 서술하고 구체적인 공동연구 계획(기술협력, 업무분담 등)에 대하여 제시
 - (1단계 진입 시) 공동연구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등 증빙
 - (2단계 진입 시) 국내외 공동연구 계획에 대한 증빙 필수
-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 이후 해외연수, 출장,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구 공백 발생 시 특별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
- 1단계 종료 2개월 전('25.10.31. 이전) 단계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함
- 일반적인 사항은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·관리 규정」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따름

▶ 선정평가 기준

적용가점	○ 해당 사항 없음	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항목	소항목
서면·구두 평가	연구개발계획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목적과의 부합성(10) ○ 연구개발 목표/추진 방법의 적절성 및 창의성(10) ○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연구개발 목표 실현 가능성(10)
	연구개발역량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관 연구개발기관/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역량(10) ○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조직구성 적절성(10)
	공동연구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양자 간 상호보완성 및 공동연구 필요성(10) ○ 국내외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기반 구축 정도(5) ○ 공동연구 수행기관 간 역할 분담의 적정성(15)
	연구개발성과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성과의 적정성(10) ○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(10)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